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(안)

의안 번호	23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6. 5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지역주민 다수를 상대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지역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

○ 최초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

- 1차 위반 : 100만원
- 2차 위반 : 200만원
- 3차 위반 : 300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지역보건법 제26조
- 제14차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필(2006.3.17)

나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06.2.23 ~ 3.15 결과 : 별도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.)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과태료 부과 등) ①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③과태료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.

제3조(청문) ①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②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4조(불복) ①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바로 곧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과태료의 귀속)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제4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조(강제징수)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 부과기준(제2조 제2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.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부과금액(단위 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1.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	법 제26조 제1항 제1호	100	200	300
2. 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	법 제26조 제1항 제2호	100	200	300